
2018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기관경고) 공개

◆ 2018.11.29.~12.7.(7일간) 전라남도 감사인력 14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라남도

기관경고

제 목 5급 승진의결 대상자 승진교육 미 실시
기 관 명 신안군
내 용

신안군(◆◆◆◆과)는 2018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를 의결하고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이하 “5급 승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게 한 후 5급으로 승진임용 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에는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에 따라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따라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안군은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의결하고, 해당 대상자를 5급 승진교육에 입교시켜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결원이 생기면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했어야 한다.

신안군(◆◆◆◆실)은 2018. 1. 5. 인사위원회에서 행정6급 ○○○(19**.*.

.)과 ○○○(19, **, **) 2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하고 5급 승진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신안군(◆◆◆◆실)은 전라남도(총무과) 2018년도 제2기 5급 승진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요청 공문을 받고 2018. 1. 15. 제2기 5급 승진교육 대상자로 당시 △△면장(직무대리) ○○○과 △△면장 (직무대리) ○○○ 등이 포함된 명단을 제출 하였으나, 2018. 1. 26. 신안군(◆◆◆◆실)은 ○○○과 ○○○의 5급 승진교육 입교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라남도(총무과)에 제출하고, 2018. 12월까지 5급 승진교육을 보내지 않았다.

한편, 신안군(◆◆◆◆과)은 2018. 8. 17. 인사위원회에서 [표]와 같이 ○○○(19**, *. **) 등 13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하고 5급 승진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 등 6명을 2018년 제10기 5급 승진교육(2018. 10. 22.~11. 30.)을 이수하게 한 후 2018. 12. 1.자로 5급으로 승진임용하였으며, ○○○○ 등 7명도 제11기 5급 승진교육(2018. 11. 5.~12. 14.)을 이수하게 한 후 2018. 12. 15.자로 5급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표] 2018 하반기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대상 선정 현황

순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임 용 일	
				최 초	현직급
1	◆◆ ◆◆과	행정6급	○○○ (**,**,**.)	90.12.21. (27.8)	06.09.26. (11.11)
2	◆◆ ◆◆과	"	○○○○ (**,**,**)	89.6.01. (29.2)	04.06.10. (14.2)
3	■ ■ ■ ■ 사무소	"	○○○ (**,**,**.)	87.11.23. (30.9)	98.05.18. (20.3)
4	■ ■ ■ ■ ■ ■ ■ ■ 개발단	"	○○○ (**,**,**.)	92.12.28. (25.8)	06.04.01. (12.4)
5	◆◆ ◆◆과	"	○○○ (**,**,**.)	89.09.16. (28.11)	05.03.02. (13.5)
6	◆◆ ◆◆과	사회복지 6급	○○○ (**,**,**.)	91.12.02. (26.8)	07.05.11. (11.3)
7	◆◆◆ ◆◆과	농업6급	○○○ (**,**,**.)	89.09.16. (28.11)	98.10.22. (19.10)
8	■ ■ ■ ■ ■ ■ 사업소	"	○○○ (**,**,**.)	89.09.16. (28.11)	00.02.01. (18.6)
9	◆◆ ◆◆실	수의6급	○○○ (**,**,**.)	92.10.15. (25.10)	03.10.01. (14.10)
10	◆◆ ◆◆읍	수산6급	○○○ (**,**,**.)	87.06.08. (31.2)	05.03.02. (13.5)
11	◆◆ ◆◆면	"	○○○ (**,**,**.)	93.02.15. (25.6)	09.01.05. (9.7)
12	◆◆◆◆ ◆◆과	시설6급 (토목)	○○○ (**,**,**.)	92.12.28. (25.8)	07.05.11. (11.3)

13	◆◆과	"	○○○ (**,**,**.)	89.08.02. (29.0)	07.05.11. (11.3)
----	-----	---	--------------------	---------------------	---------------------

그 결과 신안군은 전임 군수 재임 시에 5급 승진의결된 ○○○과 ○○○은 1년이 지나도록 5급 승진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훈련성적이 없어 승진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임 군수 취임 이후 5급 승진의결된 13명은 5급 승진교육을 이수하자마자 승진 임용하였다.

이에 대해 신안군에서는 먼저 5급 승진의결된 사람을 5급 승진교육에 먼저 보내야 하는 규정이 없고, 교육대상자 선발도 연령, 경력, 능력, 리더십, 임용권자의 군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로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당시 신안군 ◆◆◆◆과 ◇◇담당은 문답서에서 임용권자에게 먼저 승진의결된 사람들을 5급 승진교육에 보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임용권자가 나이와 경력이 적으므로 늦게 보내도 된다고 하였고, 이후 전남도 감사반의 질문서에 대해 교육대상자 선발 시 연령, 경력, 능력, 리더십, 임용권자의 군정철학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 임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5항 및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는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동일한 조건, 즉 훈련성적이 있을 경우를 기본 전제로 하며, 승진의결된 사람을 5급 승진교육에 보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승진임용 순위가 바뀌게 되는, 승진임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신안군의 경우와 같이 먼저 승진의결된 사람을 5급 승진교육에 입교시키지 않으면서 이후에 승진의결된 사람을 5급 승진교육을 먼저 이수하게 하여 승진임용할 경우 승진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의결과 교육대상자 선발이라는 2개의 결정단계를 거쳐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5급 승진교육에 보내도 된다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고, 사실상 이전에 신안군에서 결정한 행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신안군에서 5급승진리더 교육을 보내는 문제는 연령과 경력, 능력, 리더십, 임용권자의 군정철학을 고려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5급 승진의결 시 이미 고려했어야 할 사항으로, 설령 신안군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2018년 1월

에 신안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승진의결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승진의결이라는 이유로 5급 승진교육을 보내지 않아 사실상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무효화 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안군에서 교육대상자 선발 시 연령과 경력, 능력, 리더십, 임용권자의 군정철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승진의결 시 이미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로 인해 신안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를 위반하였고, 먼저 승진의결되었음에도 5급 승진교육을 보내지 않아 이후에 승진의결된 사람들을 먼저 승진임용한 것은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위반될 여지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기관경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5급 승진리더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승진임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